

가정폭력 피해 장애인의 외부도움요청 영향 요인

Factors on Help-seeking Behaviors among the Disabled Experiencing Domestic Violence

김재엽(Jae-Yop Kim), 이민경(Min-Gyeong Yi)*, 박지민(Ji-Min Park)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factors on help-seeking behaviors among the disabled experiencing lifelong domestic violence and suggest practical plans to address the problems. According to an analysis of the data of the "2010 Domestic Violence Survey of South Korea", the occurrence rate of lifelong physical violence is 12.1% and that of severe physical violence is 6.2% among 273 adults with disabilities. The rate of help-seeking among the disabled experiencing lifelong domestic violence is 26.3%, which means two-thirds of the disabled experiencing domestic violence do so for a long time.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experience of severe physical violence($p < .05$), attitudes toward violence($p < .05$), and awareness of domestic violence and related laws($p < .05$) were found to have an impact on help-seeking behaviors among adults with disabilities experiencing domestic violence. However, an accepting attitude of disability and social connections of disabled were not found to have an impact on help-seeking behavior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raising awareness about domestic violence among the disabled, educating people with disabilities not to tolerate violence and informing them about the domestic violence-related legal system, and training service professionals (social workers, health professionals etc.) to screen the disabled for domestic violence and prevent them from becoming domestic violence victims.

▲주제어(Key Words) : 장애인의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among the disabled), 외부도움요청(help-seeking behaviors), 폭력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violence), 가정폭력관련법 인식(awareness of domestic violence and related laws)

I. 서론

장애인의 폭력에 대한 연구는 대규모 시설에서 이루어진 구조적 폭력의 실상이 공개되면서 사회 이슈화가 되는 방식으로 관심을 받았지만 주로 인권적 관점에서 연구되었고(Im, 2012), 장애인의 가정폭력 실태, 대응방식 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 가정폭력에 대해서 가해자의 범위, 폭력의 내용에 대한 연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일부 장애인의 가정폭력을 다룬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이 경험하는 가정폭력을 '장애인'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장애로 인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Slayter, 2009, Curry et

* Corresponding Author : Min-Gyeong Yi,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Yonsei-ro 50,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tel: +82-2-2123-6203, E-mail: ymg75@hanmail.net

al., 2011).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신체·인지·정서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수행을 위해 가족 구성원 뿐 아니라 간병인·활동보조인 등 돌봄서비스 제공자에 의해서도 밀접한 관계와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해자의 범위를 가족원 이상으로 포괄적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Baladerian, 2009; 154, Cramer and Plummer, 2009; 168), 폭력의 내용과 범위에서도 생존에 필수적인 식사, 화장실 이용, 약복용을 비롯해서 외출, 교통시설 이용 등 사회적 활동까지 총체적인 생활을 주 돌봄자에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비장애인과 다른 차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Cramer and Plummer, 2009).

장애인 가정폭력의 경우 가해자 범위가 넓을 수 있고 폭력 내용이 다양하고 피해상황에 보다 많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에 대한 높은 의존성과 낮은 사회적 교류, 그리고 이로 인한 정보 획득 통로의 제한, 도움 요청을 위한 이동 등 물리적 접근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폭력 피해 경험의 보고는 낮을 수 있다(Lightfoot & Williams, 2009, Curry et al., 2011). 실제로, 2010년 실시된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난 1년간 경험한 가정폭력은 비장애인 기혼자 53.8%, 장애인 42.4%로 장애인의 가정폭력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신체적 폭력율은 비장애인 16.7%, 장애인 23.2%로 높게 나타나(Kim et al., 2011) 가정폭력 전반에 대한 보고 비율은 낮지만 실질적으로 위험이 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율은 높게 나타났다.

대다수의 연구에서 가정폭력을 경험한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폭력경험을 유지하는 기간이 길고(Cramer & Plummer, 2009: 168), 일상생활에서 지원되는 필수적인 지원의 중단(신변처리에서의 지원 중단, 약 복용에 대한 지원 중단 등)에 대한 두려움,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 접근성 제약으로 인하여 폭력 경험에 대해 쉽게 노출하지 못하여 가정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비장애인에 비해 오히려 더 적다고 지적하고 있다(Cramer, Gilson, & Depoy, 2003; Slayter, 2009).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경험하는 폭력은 상처와 같은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 문제에도 피해를 끼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yiska, 1998; Martin et al., 2006; Lim & Bae, 2011: 21, 재인용). Kim et al.(2011: 218)은 장애인이 아동기에 경험한 가정폭력 경험이 성인기의 가정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어 장애인이 경험하는 가정폭력은 장애인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이후 장애인의 가정에 까지 위협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폭력에 대한 외부 도움 요청은 폭력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적극적 대처로, 이후 폭력 행동의 중단을 위한 노력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미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의 종식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폭력 피해자가 비공식적인 도움을 주는 주변자원을 활용하거나 공식적인 자원으로 경찰, 사회서비스기관, 그리고 법관, 변호사 등에 대한 도움요청 행위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Bowker, 1983; Kim & Lee, 2008: 10, 재인용). 장애인의 경우 사회 활동이 낮고, 정보 획득 기회가 낮아 가정폭력을 경험한 이후에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로 연결되기까지는 보다 많은 장벽이 존재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가정폭력 경험에 대한 외부도움 요청 현황을 파악하고, 외부도움요청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외부도움요청 등 가정폭력 피해 이후 장애인의 적극적 대처를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그럼으로써 폭력 발생 가능성에는 보다 많이 노출되어 있으나 은폐되기 쉬운 장애인의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1. 장애인의 가정폭력

장애인 가정폭력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가정폭력 실태의 체계적인 파악이 장애인에 대한 대상 정의,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점이 있으며(Nosek, Howland, & Hughes, 2001, Nosek et al., 2006; 838, 재인용, Lim & Bae, 2011; 21), 개별 연구자들에 의한 조사에서는 다소 편차가 있는 장애인 가정폭력발생율을 제시하고 있어(Nesek et al, 2006, Slayter, 2009) 체계적인 전국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사실 장애인의 가정폭력 경험율을 제시한 조사는 많지 않은데,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와 전국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에 대한 정례조사인 장애인실태조사가 있다. 2010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이 지금까지 가정에서 경험한 가정폭력율은 48.2%며, 이 중 신체적 폭력 경험율은 23.2%로 나타나 장애인의 약 1/4이 가정 내에서 신체적인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Kim et al., 2011; 463-465),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이 평생동안 가정에서 경험한 가정폭력율은 9.7%이며, 이 중 신체적 폭력 경험율은 9.0%인 것으로 제시하였다(Byeon et al., 2008: 295-296).

장애인이 경험하는 가정폭력이 비장애인과 어떠한 차이를 갖는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즉, 장애 그 자체가 가정폭력에 대한 취약성을 갖는지, 가정폭력 피해 이후 대처행동이나 피하고자 하는 행동에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 다만, 관련연구에서는 장애인에 대해 가족이나 돌봄제공자가 이동 등에 본인의 의사와 반하게 지원하는 것, 통제하려는 행동, 의료지원(약물 복용 등)을 제때 하지 않는 것, 기본 신변처리를 지원하지 않는 것 등 장애인에 대한 학대의 범위가 비장애인에 비해 넓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Nosek et al., 2006; Lightfoot & Williams, 2009; Baladerian, 2009)¹⁾. 또한, 장애인의 경우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범위가 가족 외에 돌봄서비스 제공자(자원봉사자,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등), 재활 및 치료 담당자 등 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서적, 언어적, 혹은 신체적 폭력을 가정폭력의 범위 안에 포괄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확대된 범위 규정과 학대 내용의 확대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Baladerian, 2009: 154; Slayter, 2009: 183; Curry et al., 2011: 431). Cramer and Plummer(2009: 193-197)는 장애는 그 자체로 폭력에 대한 취약성을 가지며, 장애여성의 신체적인 비기능(incapacity) 상태가 학대의 환경에서 어떤 기회를 조성하고 제한하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다양한 학대의 범위에 대한 체계적인 사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장애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가정폭력 경험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로 Schumacher et al.(2001)은 낮은 교육수준, 실업, 아동기 정서적 및 언어적 학대 경험이 가정폭력 피해 경험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Jans & Stoddard(1999)은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의 경우 비장애여성은 물론 장애남성에 비해서도 낮은 교육수준,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인다고 하면서, 장애여성의 낮은 교육수준과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이 가정폭력 경험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하였다(Nosek et al., 2006: 838-839). 반면, Nosek et al.(2006)은 장애여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정폭력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높은 교육 수준이 오히려 장애여성의 가정폭력 경험과 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교육 수준이 높은 장애여성일 수록 자신의 경험을 폭력으로 정의하여 표현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개방할 수 있는 허용정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동일 연구에서 장애여성이 연령이 낮을 수록, 신체적 장애 정도가 심하여 이동에 제약이 심할 수록, 사회적 고립 정도가 높을 수록, 우울 정도가 높을 수록,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을 수록 가정폭력 경험율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장애여성에 대한 장애 경험과 가정폭력

경험의 관계는 인생 주기를 고려한 종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2. 가정폭력 피해 장애인의 외부도움요청

외부도움요청(help-seeking)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이다. Landis et al.(2005)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취하는 외부도움찾기 유형을 첫째, 친척, 친구, 종교지도자 등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즉 사적 지지망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둘째, 사회복지기관이나 상담가를 찾아가는 것 셋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넷째,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네 가지 도움요청 행동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71%를 차지한 사적 비공식 지지망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Jang & Kim, 2005: 130).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외부도움요청 행위가 일차적으로 주로 사적 지원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가정폭력을 타인에게 이야기했을 때의 비난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 공적지원체계에 알리는 경우 사생활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 경험자들의 경험적 지식에 의한 효과적 대처전략은 개인적인 피신이나 사적 지원망(친구, 친척, 종교 지도자 등)을 활용하기 보다는 공식적인 지원체계(경찰, 법원 등)를 활용하는 것이 폭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다(Chang, Huh, & Kim, 2001: 233).

이러한 외부도움요청 행동은 가정폭력의 재발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고 피해자의 우울을 완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Kim, Jung, and Song(2011)은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아내에 대한 연구에서 피해 여성의 외부도움요청이 신체적 폭력의 재발을 줄이는데 조절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Kim, Lee, and Choi(2012)는 운동부 내 여성 선수들이 경험하는 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외부도움요청이 실질적인 폭력 재발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나 폭력피해 경험으로 인한 피해자의 우울을 차단하는 완충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장애인의 외부도움요청은 어느 정도이며,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Slayter(2009:183)는 장애인이 경험하는 가정폭력과 사례관리에 대한 연구에서 장애여성의 가정폭력 위험요인은 비장애여성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장애로 인한 특수성으로 인한 추가적인 위험요인이 있다고 하면서 사회통합 부족, 배우자나 보호자에 대한 높은 의존성을 위험요인의 예로 들었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장애여성의 약 18%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러한 외부도움 요청에는 장애인의 언어장애, 인지장애 등으로 인한 의사소통 제약, 경찰서, 법원, 가정폭력 서비스 기관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의 어려움이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1) Cramer, Gilson and Depoy(2003)은 이러한 개념을 더 발전시켜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한 돌봄서비스 지원, 소통을 원하는 장애인과 소통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 사회·문화적으로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 등 장애인의 권리와 의사에 반한 부분까지를 '장애인에 대한 학대'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였다.

Curry et al.(2011)은 지난해 혹은 평생동안 가정폭력 및 학대를 경험한 276명의 장애여성 중 55%가 의료진, 사례관리자, 경찰서 등에 폭력경험을 알린다고 하여 높은 외부도움요청 비율을 보고 하였다. 이러한 외부도움요청을 격려하는 요인으로 자신의 경험이 폭력 및 학대에 해당된다는 인지적 확인(identify), 사적인 영역(privacy)이 존중받을 것이라는 확신, 자신의 요구사항이 존중될 것에 대한 기대라고 하였고, 반대로 외부도움요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도움요청에 따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 과거 공적기관 신고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경험, 가해자로 부터의 보복성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꼽았다.

Chang, Huh, & Kim(2001 : 241-243)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상담기관 이용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시설 이용 여성 중 41.8%가 가정폭력 후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경찰 신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피해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폭력빈도가 잦고 심각한 폭력을 경험할수록, 가정폭력관련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였다. 이는 폭력의 빈번함이나 심각한 폭력과 같은 폭력상황 요인이 피해자의 적극적 대처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하고, 아울러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인지가 적극적 대처를 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폭력에 대한 태도에 대한 연구로, Kim(1998)은 가정폭력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일수록 배우자나 자녀에게 폭력 행동을 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폭력에 대한 태도는 아동기 폭력 경험이나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의 영향을 받아 허용적으로 형성된다고 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Kim, Lee, & Jung(2008)은 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어린 시절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하며, 이러한 폭력에 대한 태도가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폭력에 대한 태도와 피해자의 대처행동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가 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반대로 폭력에 대한 비허용적인 태도는 폭력 발생시 중단시키거나 하는 행위, 즉 적극적인 외부도움요청으로 나타날 수 있다. 폭력에 대한 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외부도움요청 행동에 주요 변인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장애수용태도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대면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경험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 사회적 문제 등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으로 이해되며, 선행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장애인 가족의 건강함을 유지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Jung & Kang, 2011; Kim, & Park, 2009). 이러한 장애수용 태도가 가정폭력 발생시 피해 장애인의 외부도움

요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사회참여에 따른 고립감(socially isolation)을 경험하는데, 이로 인한 정보접근의 제약과 사적 지원망의 부족은 장애인의 가정폭력 경험 이후의 외부도움요청 등 대응전략에 있어서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Lightfoot & Williams, 2009: 138-139). 특히 장애유형별 특성과 관련해서,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경우 외부 가정폭력 피해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 부족, 일부 장애유형의 경우 장애인 공동체의 강한 유대감이 오히려 가정내 폭력 경험을 외부에 알리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지적 장애 등 인지적 장애의 경우 가정폭력에 대한 외부도움요청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더 많은 장애를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Curry et al., 2011).

폭력피해 장애인의 외부도움요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외부도움요청에 대한 요인과 함께 장애로 인한 특성도 같이 검토되어야 하므로 보다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외부도움요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가정폭력관련 법 인식유무,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비롯해서, 장애인의 외부도움요청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사회적 교류정도와 장애수용정도를 중심으로 가정폭력 피해 장애인의 외부도움요청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및 대상

본 연구는 2010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의 장애인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조사는 장애인관련시설 이용 성인장애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40개 장애인 서비스제공기관(서울 29개소, 부산 3개소, 대구 3개소, 광주 2개소, 대전 2개소, 인천 1개소)을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각 시설의 장애인관련 업무담당자가 장애인과의 면접(자기기입이 가능한 장애인은 제외)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고, 설문지는 우편회수 또는 방문회수를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9월 27일~2010년 12월 29일까지 5주간 이었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하였으며, 장애유형을 신체외부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외부장애 유형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으로 한정하여 총 273명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측정 도구

1) 가정폭력경험

본 연구에 가정폭력 경험을 측정한 도구는 Straus의 CTS2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1996)로, 15개 문항 중 성 학대와 관련된 2개 문항을 제외한 1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신체적폭력에 대해서 7문항, 경제적 폭력 3문항, 정서적 폭력 3문항이다. 신체적 폭력은 폭력의 심각성에 따라 경한 폭력과 심각한 폭력으로 구분하였는데, 경한 폭력은 상대방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꼭 움켜잡거나,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리는 행위로 보았고, 심각한 폭력은 목을 조르거나,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기, 혁대나 몽둥이로 때리기,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경제적 폭력은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는 경우이며, 정서적 폭력은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때리려고 위협하거나, 상대방의 물건을 파손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의 가정폭력 경험은 지난 1년간의 빈도와 1년 이전의 경험 유무로 구분하였으며, 지난 1년간의 빈도는 없음, 1회, 2회, 3~5회, 6~10회, 11~20회, 20회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2) 외부도움요청

외부도움요청은 가정폭력 경험에 대해서, 폭력 경험 당시 혹은 그 이후에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유무를 통해서 보았다. 도움을 요청한 대상은 가족이나 친지, 이웃이나 친구, 종교지도자, 경찰서, 1366(여성긴급상담전화), 쉼터 및 가정폭력상담소, 사회복지시설의 관계자, 기타로 구분하였고 복수응답으로 하였다.

3) 폭력에 대한 태도

폭력에 대한 태도는 문제해결방식에 있어서 폭력사용에 대한 개인의 용인 정도로 파악하였다. 김준호(1997)의 '폭력에 대한 태도' 척도를 5개 문항으로 축소,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Kim et al., 2011: 448). 폭력에 대한 태도 측정 문항은 다음과 같다. 1)결과만 좋다면 폭력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2)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3)많은 경우 폭력이 일처리를 쉽게 만든다, 4)싸움을 먼저 걸어온 사람을 때리는 것은 나쁘지 않다, 5)학교나 군대에서 선배가 후배를 때리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Cronbach's $\alpha = .826$).

4) 가정폭력관련 법인식

가정폭력관련 법인식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에 처벌등에 관한 특별법」을 알고 있는지 유무를 통해서 보았다.

5) 장애수용정도

장애수용정도는 이익섭·신은경(2006)이 개발하고 이익섭(2007)이 수정한 '장애정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인식(수용)을 측정하며,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Kim et al., 2011: 448).

6) 사회적 교류정도

사회적 교류는 지난 1년 동안 대상과의 직접 만남 횟수, 활동 참여 횟수로 보았다. 교류활동은 4개 분야로 구분하였는데 부모, 형제, 가까운 친척등 가족과의 만남, 이웃 및 친구들과의 만남, 각종 사회활동(취미활동, 봉사활동, 동호회 등) 참여, 종교 활동 참여로 구분하였다. 빈도는 1년에 3~4회, 월 1회, 월 2~3회, 주 1회, 주 2~3회, 거의 매일로 구분하여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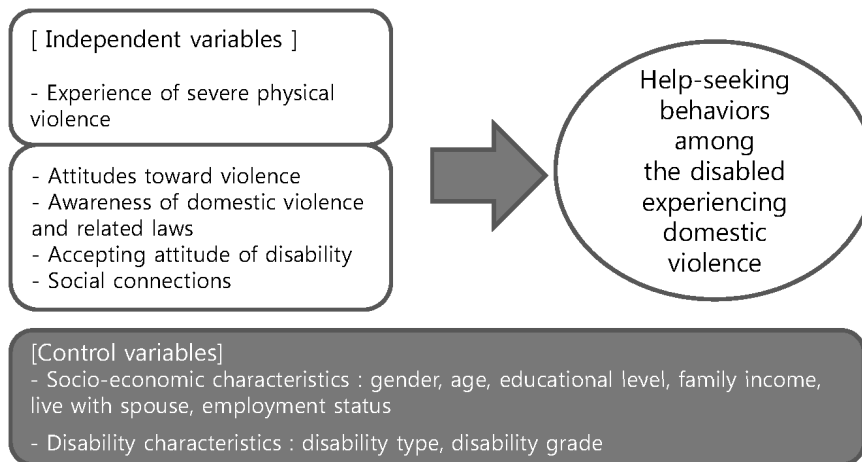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3. 연구 모형과 가설

본 연구는 신체외부장애를 갖고 있는 성인장애인의 가정폭력피해와 외부도움요청 실태를 살펴보고, 가정폭력경험 장애인의 외부도움요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경험한 신체적 폭력의 심각성과 장애인이 갖고 있는 폭력에 대한 태도, 가정폭력관련 법인식, 장애수용정도, 사회적 교류정도를 구분하여 장애인의 외부도움요청 행위에 대한 영향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 <가설 1> 장애인의 심각한 신체적 가정폭력경험은 외부도움요청에 영향을 줄 것이다.
- <가설 2> 가정폭력경험 장애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는 외부도움요청에 영향을 줄 것이다.
- <가설 3> 가정폭력경험 장애인의 가정폭력관련 법인식은 외부도움요청에 영향을 줄 것이다.
- <가설 4> 가정폭력경험 장애인의 장애수용정도는 외부도움요청에 영향을 줄 것이다.
- <가설 5> 가정폭력경험 장애인의 사회적교류정도는 외부도움요청에 영향을 줄 것이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한 집단의 특성은(<Table 2> 참조), 남성이 33.7%, 여성이 66.3%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정도 많으며, 연령대는 20~30대가 약 40%, 40~50대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분포이다. 교육 수준은 중졸이하가 31.2%, 고졸이 39.2%, 대졸이상이 29.4%의 비율이다.

가구원은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가 46.5%,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15.6%, 이외의 경우가 10.0%, 독거 가구가 27.9%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은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 미만 및 소득이 없는 경우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100만원~200만원인 경우가 22.0%, 200~300만원인 경우가 13.8%, 300만원 이상인 경우가 15.3%로 나타나 100만원 내외의 소득 분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는 36.3%로 약 1/3 정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은 신체외부 장애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지체장애가 47.6%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뇌병변장애가 23.1%, 시각장애가 17.2%, 청각장애가 10.3%, 언어장애가 1.1%, 안면장애가 0.7%의 분포를 보였다. 장애 정도는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2급)이 74.7%로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Table 3> 참조).

1. 장애인과 가정폭력

장애인에게 해당되는 가정내 일어날 수 있는 학대의 범위는 비장애인 보다 넓을 수 있다는 것이 선행연구에서 검토되어 왔는데(Cramer, Gilson, & Depoy, 2001; Lightfoot & Williams, 2009), 이는 가족원 및 돌봄서비스 제공자들이 장애인이 원하지 않는 통제와 규제를 가하거나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도움(복용해야 하는 약, 신변처리의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 등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학대행위가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가정폭력의 범위를 보았으며,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신체적 폭력으로 구분하여 장애인의 가정폭력 경험을 살펴보았으며 장애인의 가정폭력 피해율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이 가족 구성원에 의해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은 지난 1년 동안에는 26.7%로 1/4 이상의 장애인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참조). 평생동안으로 보면 1/3 이상의 장애인(34.1%)이 지금까지 1회 이상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지난 1년 기준으로는 10.6%, 평생동안으로는 13.9%로 나타나 장애인 100명 중 14명은 생애 중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는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폭력의 경우 지난 1년 동안은 4.4%, 평생동안으로는 6.2%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은 성별, 연령, 교육 정도, 가구원, 경제적 상황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장애유형 및 등급의 장애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으므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20대와 60세 이상 장애인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정폭력 피해 경험율이 다소 높으며, 부모와 동거하는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인 폭력,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는 경우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Table 1. Occurrence Rates of Domestic Violence among the Disabled

	N	Entire domestic violence	Emotional abuse	Economic abuse	Physical Abuse		
					Total	Moderate	Severe
The Previous Year	273	26.7%	24.9%	5.9%	10.6%	9.2%	4.4%
Life Course		34.1%	31.5%	8.4%	13.9%	12.1%	6.2%

Table 2. Occurrence Rates of Physical Violence among the Disabled by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N	The previous year		Life course	
			Physical abuse(%)	Severe physical abuse(%)	Physical abuse(%)	Severe physical abuse(%)
Gender	Female	181	11.0	5.5	13.3	7.2
	Male	92	9.8	2.2	15.2	4.3
	Total	273	10.6	4.4	13.9	6.2
Age(years)	20 - 29	40	15.0	7.5	17.5	10.0
	30 - 39	74	13.5	5.4	14.9	6.8
	40 - 49	66	6.1	1.5	9.1	3.0
	50 - 59	68	10.3	4.4	14.7	5.9
	≥ 60	25	8.0	4.0	16.0	8.0
	Total	273	10.6	4.4	13.9	6.2
Educational Level	Less than secondary	84	9.5	4.8	14.3	7.1
	Secondary	106	13.2	4.7	15.1	6.6
	Post-secondary	79	8.9	3.8	12.7	5.1
	Total	269	10.8	4.5	14.1	6.3
Person they live with	Spouse	125	9.6	4.0	12.8	4.8
	Parents	42	16.7	4.8	19.0	9.5
	Other	27	11.1	3.7	14.8	3.7
	Alone	75	9.3	5.3	13.3	8.0
	Total	269	10.8	4.5	14.1	6.3
Family Monthly Income (million won)	No income	80	12.5	8.8	16.3	11.3
	< 100	51	5.9	2.0	11.8	2.0
	100 - 199	59	8.5	1.7	10.2	1.7
	200 - 299	37	10.8	2.7	16.2	10.8
	300 - 399	22	13.6	4.5	13.6	4.5
	400 - 499	10	10.0	10.0	10.0	10.0
	≥ 500	9	22.2	0.0	22.2	0.0
Total	268	10.4	4.5	13.8	6.3	
Employment Status	Employed	99	12.1	4.0	13.1	5.1
	Unemployed	174	9.8	4.6	14.4	6.9
	Total	273	10.6	4.4	13.9	6.2

Table 3. Occurrence Rates of Physical Violence among the Disabled by Disability Type and Grade

		N	The previous year		Life course	
			Physical abuse(%)	Severe physical abuse(%)	Physical abuse(%)	Severe physical abuse(%)
Disability type	Musculoskeletal disorder	130	7.7	2.3	12.3	4.6
	Brain lesions	63	14.3	7.9	15.9	9.5
	Visul disorder	47	8.5	2.1	10.6	4.3
	Auditory disorder	28	17.9	10.7	21.4	10.7
	Language disorder	3	33.3	0.0	33.3	0.0
	Facial disfigurement	2	0.0	0.0	0.0	0.0
	Total	273	10.6	4.4	13.9	6.2
Disability grade	Severe (Grade 1-2)	192	10.9	4.7	13.5	6.3
	Mild (Grade 3-6)	65	6.2	1.5	12.3	4.6
	Total	257	9.7	3.9	13.2	5.8

장애특성으로 뇌병변장애와 청각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인 의미가 있지는 않았으며, 장애등급 1~2급의 중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에 비해 신체적인 폭력 경험이 높게 나타났지만 역시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

2. 가정폭력 피해 장애인의 외부도움요청

본 연구에서 외부도움요청은 가족 구성원의 폭력 행동에 대해 당시 또는 그 이후에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행위로 보며, 가족 및 친척, 이웃이나 친구, 종교지도자, 경찰서, 1366, 상담 및 가정폭력상담소,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기타 중 어느 곳이라도 폭력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한 경우, 외부도움요청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도움 요청 대상이 가족 및 친척, 이웃이나 친구, 종교지도자인 경우, 사적 도움요청으로 보았고, 경찰서, 1366, 상담 및 가정폭력상담소, 사회복지시설의 관계자인 경우 공적 도움요청으로 보았다.

전체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장애인 중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14%이며,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비율은 86%였다(<Table 4> 참조). 폭력 유형 및 정도에 따라서 외부도움요청 비율을 살펴보면, 정서폭력을 경험한 장애인의 15.1%, 경제적 폭력을 경험한 장애인의 17.4%, 신체폭력을 경험한 장애인의 26.3%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특히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장애인의 29.4%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 정서폭력이나 경제적폭력에 비해 신체적폭력을 경험한 경우 외부도움요청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심각한 폭력을 경험한 경우 외부도움요청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 가정폭력경험 장애인의 외부도움요청 관련 요인

1) 장애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가정폭력관련 법인식, 장애 수용도, 사회적 교류정도

장애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는 4점 척도로 살펴보았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에 대해서 허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장애인의 가정폭력에 대한 태도 평균값은 1.55로 나타났다(<Table 5> 참조). 이는 1(전혀 그렇지 않다)와 2(그렇지 않다)의 중간 정도로 폭력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0년 전국폭력실태조사(Kim et al., 2011; 94-95)의 전국표본(비장애인)에서 나타난 가정폭력에 대한 태도 평균값은 1.72로 장애인의 가정폭력에 대한 태도 평균값은 비장애인에 비해 낮게 나타나 가정폭력에 대해서 덜 허용적인 경향을 보였다. 또한, 평생동안 1회 이상 가정폭력을 경험한 장애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는 그렇지 않는 장애인에 비해 더 허용적인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4. Help-seeking Behaviors among the Disabled Experiencing Lifelong Domestic Violence by Abuse Type

		Entire domestic violence (N=93)	Emotional abuse (N=86)	Economic abuse (N=23)	Physical Abuse		
					Total (N=38)	Moderate (N=33)	Severe (N=17)
Help-seeking	Personal	12.9	14.0	17.4	23.7	24.2	29.4
	In public	1.1	1.2	-	2.6	3.0	-
No help-seeking		86.0	84.9	82.6	73.7	72.7	70.6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Table 5. Attitudes Toward Violence among the Disabled

	Persons with disabilities			General population ²⁾ (N=3,122)
	No domestic violence in one's life (n=171)	More than once experiencing domestic violence in one's life (n=90)	Total (N=261)	
Attitudes toward violence ¹⁾	1.51	1.62	1.55	1.72
t = -1.558				

Note : 1) The higher figure is, the more he/she tolerates violence.

2) Source: "2010 Domestic Violence Survey of South Korea(1)", pp. 94-95.

장애인의 「가정폭력방지법」이나 「가정폭력특례법」과 같은 가정폭력 관련 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66.8%의 장애인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33.2%의 장애인은 모른다고 응답하여 장애인의 약 1/3은 가정폭력 관련 법인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참조). 비장애인 중 가정폭력관련 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0.6%로 장애인의 법인식 비율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Kim et al., 2011 : 159). 가정폭력의 경험유무와 가정폭력 관련 법인식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수용 정도는 1~4의 척도로 살펴보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본인의 장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다. 장애인의 장애수용정도는 평균 2.99로 3(그렇다)에 매우 근

사하게 나타났다.

장애인의 사회교류정도는 1~6 중 점수가 높을 수록 사회적 교류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평균 2.90 값이 나타나 각 사회적 교류가 월 2-3회에 가까운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참조). 세부적으로는 이웃과 친구들과의 교류가 평균 3.58로 월 2~3회 에서 주 1회 중간에 위치하며 가장 잦은 교류를 갖고 있었고, 각종 사회활동(취미, 봉사, 동호회 등) 참여가 월 2~3회에 가까운 것으로, 부모, 형제, 친인척과의 교류 및 종교활동참여가 월 1회~월 2-3회 중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수용정도와 사회교류정도는 정적인 관계로 높은 장애수용정도는 빈번한 사회교류와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Table 6. Awareness of Domestic Violence and Related Laws among the Disabled

	Persons with disabilities			General population ¹⁾ (N=3,214)
	No domestic violence in one's life (N=168)	More than once domestic violence in one's life (N=91)	Total (N=259)	
Awareness of domestic violence and related laws	67.3%	65.9%	66.8%	70.6%
$\chi^2 = 0.047$				

Note : 1) Source: "2010 Domestic Violence Survey of South Korea(1)", pp. 159.

Table 7. Social Connections of the Disabled

	Persons with disabilities (N=258)
Social connections ¹⁾	2.90
Parents, Siblings, Close relatives	2.61
Neighborhood, Friends	3.58
Social activities(Hobbies, Volunteers, Clubs, etc.)	2.80
Religious activities	2.52

Note : 1) The higher figure is, the more often he/she meets others.

1(3 to 4 times per year), 2(once a month), 3(2 to 3 times a month), 4(once a week), 5(2 to 3 times a week), 6(almost everyday)

Table 8. Attitudes Toward Domestic Violence, Accepting Attitude of Disability, and Social Connections by Help-seeking Behaviors

	Help-seeking	No help-seeking	t-value
Attitudes toward violence ¹⁾	1.34 (N=13)	1.61 (N=80)	1.539
Accepting attitude of disability ²⁾	3.06 (N=11)	3.05 (N=71)	-0.059
Social connections ³⁾	2.63 (N=13)	3.06 (N=78)	1.248

Note : 1) The higher figure is, the more he/she tolerates violence.

2) The higher figure is, the more he/she accepts one's disabilities.

3) The higher figure is, the more often he/she meets others.

2) 가정폭력경험 장애인의 외부도움요청 관련 요인
가정폭력을 경험한 장애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장애수용도, 사회적 교류정도는 외부도움요청 유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Table 8> 참조). 다만, 가정

폭력을 경험한 장애인이 폭력에 허용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경향을 보였고, 사회적 교류횟수가 높은 경우 외부도움요청을 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Table 9. Awareness of Domestic Violence and Related Laws by Help-seeking Behaviors

	Help-seeking (N=13)	No help-seeking (N=78)	Pearson χ^2
Awareness of domestic violence and related laws	84.6%	62.8%	2.357

Table 10. Factors Influencing Help-seeking Behaviors among the Disabled Experiencing Lifelong Domestic Violence

	Help-seeking behaviors among the disabled experiencing lifelong domestic violence								
	Model 1 (N=92)			Model 2 (N=92)			Model 3 (N=92)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Gender	-2.094	1.252	0.123 [†]	-3.032	1.579	0.048*	-2.947	1.667	0.053 [†]
Age	0.051	0.039	1.052	0.155	0.062	1.168*	0.145	0.062	1.156*
Educational level1 (less than secondary)	-0.915	0.948	0.400	0.278	1.250	1.320	0.341	1.276	1.407
Educational level1 (post-secondary)	-0.363	0.990	0.696	1.120	1.349	3.064	1.287	1.421	3.623
Lve with spouse	-0.832	0.807	0.435	-1.527	1.027	0.217	-1.688	1.035	0.185
Family monthly income	-0.131	0.299	0.877	-0.242	0.335	0.785	-0.292	0.339	0.747
Employment status	0.853	0.846	2.347	2.295	1.233	9.926 [†]	2.203	1.243	9.051 [†]
Disability type (Musculoskeletal disorder or Brain lesions = 1)	1.317	0.926	3.731	2.431	1.358	11.366 [†]	2.566	1.396	13.020 [†]
Disability grade (Severe = 1)	0.249	0.771	1.283	0.829	1.000	2.290	1.171	1.107	3.224
Severe physical abuse	1.352	0.746	3.863 [†]	3.052	1.202	21.149*	3.067	1.306	21.469*
Attitudes toward violence				-3.286	1.273	0.037**	-3.605	1.471	0.027*
Awareness of domestic violence and related laws				3.439	1.541	31.158*	3.683	1.752	39.779*
Social intercourse							-0.070	0.092	0.932
Acceptance of disability							0.036	0.034	1.037
(constant)	-4.608	2.073	0.010*	-9.597	3.612	0.000**	-10.442	4.148	0.000*
chi-square		14.477			29.003			30.615	
sig.		0.152			0.004**			0.006**	
-2log-likelihood		60.470			45.945			44.333	
Cox & Snell R ²		0.146			0.270			0.283	
Nagelkerke R ²		0.261			0.485			0.508	
Hosmer and Lemeshow Test	χ^2	10.687			1.258			2.401	
	sig.	0.220			0.996			0.966	

[†]p < .10, *p < .05, **p < .01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외부도움요청 장애인은 84%가 가정폭력 관련 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외부도움요청을 하지 않은 장애인은 62%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미성은 없었다(<Table 9> 참조).

3) 가정폭력경험 장애인의 외부도움요청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정폭력을 경험한 장애인이 자신의 폭력경험에 대해서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sson)을 실시하였다(<Table 10> 참조).

장애인의 외부도움요청 행위는 가정폭력의 피해 경험을 전제하고 있으며, 따라서 평생동안 가정폭력을 한번 이상 경험한 장애인 92명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통제변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장애특성으로 성별, 연령, 교육정도, 배우자동거유무, 월평균 가구소득, 직업 유무, 장애유형(뇌병변·지체장애 유무), 장애등급(1~2급의 중증장애 여부)이며, 폭력에 대한 변수로 심각한 폭력 경험유무이며, 독립변수는 폭력에 대한 태도(폭력에 대해서 용인하는 태도일 수록, 점수가 높음), 가정폭력관련 법 인식유무, 사회적 교류정도, 장애수용정도이다.

모형1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장애특성을 통제할 때, 심각한 신체적 폭력의 경험이 장애인의 외부도움요청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모형의 유의성은 없었으나, 성별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여성일수록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고($p < .1$),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확률이 3.9배 높게 나타났다($p < .1$).

모형2는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장애특성, 심각한 신체적 폭력 경험, 그리고 폭력에 대한 태도와 가정폭력관련 법인식을 독립변수로 하여 실시한 로지스틱 분석이다. 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1$), 장애여성일수록($p < .05$), 연령이 1살 증가할 때마다 1.16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며($p < .05$), 직업을 갖고 있는 장애일수록($p < .1$), 심각한 폭력을 경험한 경우($p < .05$)에 보다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에 대한 태도는 용인하지 않을수록 외부도움 요청을 하며($p < .05$), 가정폭력관련 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장애인이 그렇지 않은 장애인에 비해 31.1배 더 많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모형3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장애특성, 심각한 신체적 폭력경험을 통제할 때, 독립변수인 폭력에 대한 태도, 가정폭력관련 법인식 유무, 사회적교류정도, 장애수용정도가 장애인의 외부도움요청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살펴보았다.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p < .01$), 성별($p < .1$), 연령($p < .05$), 직업유무($p < .1$), 장애특성으로 뇌병변 및 지체

장애 유무($p < .1$)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심각한 폭력의 경험도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독립변수로는 폭력에 대한 태도($p < .05$), 가정폭력관련 법 인식 유무($p < .05$)가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장애인의 연령이 많은 경우 나이가 어린 장애인에 비해 1.15배 높게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21.5배 높게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며, 가정폭력 관련 법을 알고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39.8배 높게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폭력에 대한 태도가 덜 허용적일 수록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반면, 장애수용정도나 사회적 교류정도는 가정폭력 경험시 외부도움요청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와 모형3을 비교하면, 모형2는 모형3에서 의미가 없게 나타난 독립변수인 사회적교류정도, 장애수용정도를 제외한 모형이다. 모형2와 모형3 모두 가정폭력을 경험한 장애인의 외부도움요청에 대한 요인을 설명하는 모델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형2에서 모형3으로 갈수록 모형에 대한 Pearson chi-square 값이 커지고, R^2 값도 모형3이 모형2에 비해 크게 나타나 독립변수가 모두 포함된 모형인 모형3이, 모형2에 비해 근소한 차이나마 보다 의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 결론

언론에 보도되는 장애인에 대한 폭력 사건은 시설내 혹은 지역사회에 방치되고 보호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가정폭력율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장애인의 10.6%는 가정내에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며, 4.4%는 마구 때리는 등의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며, 일생동안에는 장애인의 13.9%가 가정내에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고, 6.2%는 도구로 때리거나 마구 때리는 등의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년간 비장애 기혼부부의 16.7%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고 이 중 3.3%가 심각한 폭력을 경험하며, 평생동안에는 23.5%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은 5.9%가 경험하는 것(Kim et al., 2011; 103-104)과 비교할 때, 장애인의 경우 가정폭력 발생율은 다소 낮으나 치명적 상해의 위험이 있는 심각한 신체적 폭력의 경우 오히려 발생율이 높게 나타나 가정폭력 피해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보호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경험한 장애인의 약 80% 이상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며,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장애인 중 약 30%만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부도움요청 대상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 거의 사적 지원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며, 경찰, 상담소, 복지기관 등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공적 지원체계 이용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방식은 소극적 방식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 대응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Jang & Kim(2005)은 현실 상황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처방식은 '배우자의 폭력행동에 대하여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장애인의 외부도움 요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장애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가정폭력관련법 인식유무, 장애수용정도, 사회적 교류 정도의 영향정도를 알아보았으며, 궁극적으로는 가정폭력 피해 장애인의 대처방식에 대한 정책 및 실천적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따른 가설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은 가정에서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할 수록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21배 높게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장애인의 경우 폭력관계에 머무는 기간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긴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데(Cramer, Gilson, & Depoy, 2003), 이는 장애인이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지원을 해주는 보호자, 돌봄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폭력을 경험할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결국 심각한 폭력을 경험하고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에서야 비로소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됨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장애인의 폭력과 학대 상황에 대한 조기발견과 예방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개인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자, 돌봄서비스 제공자 등이 장애인에 대한 학대, 폭력의 징후에 대한 인식 등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장애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는 가정폭력 경험시 외부도움요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폭력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록 가정폭력을 경험한 장애인의 외부도움요청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이는 장애인 개인이 가정폭력의 위협성과 피해를 이해하고 적절한 예방과 대처를 위한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개인 및 사회적 차원에서의 교육과 홍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장애인의 가정폭력관련 법에 대한 인식여부는 가정폭력 경험시 외부도움요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나 「가정폭력범죄에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가정폭력관련 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장애인에

비해 가정폭력을 경험했을 때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확률이 39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그렇지만, 장애인의 33%는 가정폭력관련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 예방과 인식개선, 교육 등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장애인을 포괄하는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장애인의 장애수용 정도는 가정폭력 경험시 외부도움요청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는 경험이 가정폭력 경험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장애를 자기수용을 통해 직시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자기 극복의 경험을 하고 직업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Kim, H. & Jo, S., 2009), 사회적 지지와 함께 사회참여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고 하더라도(Oh, H. & Lee, H., 2011), 가정폭력 이후 대처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장애에 대한 심리적 극복 경험을 하였더라도 가정폭력에 대한 태도의 형성이나 가정폭력관련 법 등 사회 지원체계에 대한 인식 없이는 가정폭력 발생 이후 적극적인 대응방식을 취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수용이 개인 차원에서 사회참여를 높일 뿐 아니라 가족내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향후 장애인의 가족폭력 관련 연구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애인의 사회교류의 빈번 정도는 가정폭력 경험시 외부도움요청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socially isolation)의 문제는 가정폭력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Lightfoot & Williams, 2009, Curry et al., 2011). 그러나, 연구결과 장애인이 가족, 친척, 이웃 등 주위 사람들과의 빈번한 교류가 가정폭력 경험시 외부도움요청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가 복지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외출이 어려워 집에만 머물러 있는 등 사회적 교류가 낮은 장애인이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 양적인 부분 외에 주위 사람들과의 심리·정서적 친밀감, 신뢰감 등 관계의 질적인 면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 장애여성이 남성에 비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고($p < .1$), 연령이 많을 수록($p < .05$),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p < .1$), 뇌병변이나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p < .1$), 가정폭력 경험에 대한 외부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여성의 경우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심리적인 피해가 더 크므로 외부에 보다 더 많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접근의 용이함으로 인하여,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시각 및 청각장애인에 비해 의사소통의

제약이 적다는 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연령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와 다른 결과로, 선행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폭력행동에 대해서 문제삼기를 두려워 하는데, 이는 친밀한 관계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현재의 생활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음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다고 하고 있다 (Nosek et al., 2006: 846-847; Curry et al., 2011: 439).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경험 장애인의 외부도움요청은 주로 사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따라서 연령이 높을수록 가정내에서 경험하는 가정폭력 경험을 외부에 알리는 데에서 오는 수치심, 부끄러움이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외부도움요청을 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연령과 외부도움요청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 바탕으로 가정폭력 피해 장애인의 적극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실천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장애인과 밀접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시스템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가정폭력은 비장애인의 경우와 다소 낮으나 유사한 비율로 발생하지만,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서비스 내에서 가정폭력 지원 서비스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가정폭력 전담 서비스 기관 및 시설에서는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장애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등 접근성이 낮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에 대해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장애인복지관, 주단기보호시설, 특수학교, 보건 의료 기관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적극적 대응방식, 피해자 지원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장애인의 가정폭력에 대해 민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폭력 전담 기관 및 시설에서는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이 경험할 수 있는 폭력상황에 대한 구체적 사례 연구를 통해 지원방식의 노하우를 쌓을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폭력관련 법인식, 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사회적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특수학교, 특수학급, 장애인복지관, 생활시설 및 주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센터와 같이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한 곳을 중심으로 장애인 대상의 가정폭력 인식 및 예방에 대한 교육, 가정폭력 발생시 대응방식 및 지원시스템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시각·청각 장애, 인지적 장애와 같이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육 내용과 방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비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과 홍보시 장애인의 가정폭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장애인의 가정폭력, 학대에 대해서 학계, 실천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내용 및 범위에 대한 논의를 통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가정폭력의 경우 가해자의 범위가 가족원의 돌봄서비스 제공자,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자, 복지서비스 제공자 등 일상적인 도움을 주는 관계로 까지 확대해야 하며, 학대의 내용에서도 장애인 입장에서 학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즉, 장애인이 속한 공동체, 가족 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경험하는 학대적 행동을 '사회적인 문제행동'으로 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장애인이 가정내에서 경험하는 학대, 폭력 행동에 대한 개별 사례연구와 아울러 사회적으로 문제행동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범위를 같이 고려하여 장애인의 가정폭력 범위를 정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정의 틀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가정폭력 실태가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체성에 기반하여 폭력에 대한 예방과 발생 이후의 대응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의 가정폭력 경험 이후 대응방식은 가정폭력에 대한 법 인식과 폭력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미치며, 장애수용 정도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이 경험하는 폭력의 경험과 이후 대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장애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는 장애를 고려한 방식이 필요한데, 이를테면 청각장애인에게는 수화를 동반한 교육과 고유 공동체 문화를 고려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 홍보, 교육자료가 필요하며, 지적장애인에게는 이해의 수준을 맞춘 교육자료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장애 유형별로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은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방과 대응방식에서도 장애에 대한 특수성은 고려되어야 한다.

미국 Violence Against Women Act(VAWA 2000)는 가정, 학교, 사이버 공간을 비롯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폭력, 학대, 스토킹 등에 대해 대처 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른 예산을 배정하는 법안으로,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 및 학대 내용, 예방에 대해서 법무부, 검찰 등 법집행과 사무를 보는 공무원, 법 관련 비정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5년간(2001~2005년) 5백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Siskin, 2001: 18). 이는 장애관련 영역 뿐 아니라 다른 영역 전문가들이 장애인의 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접근해야 장애인의 폭력, 학대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의 향후 장애인 가정폭력에 대해 사회적인 인식을 높이고, 폭력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전략

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장애인의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비장애인과는 보편성과 동시에 장애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의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REFERENCES

- Baladerian, J. N.(2009). Domestic violence an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 Reflections on research and practice.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18*, 153-161.
- Byeon, Y. & Kim, S. & Yoon, S. & Kang, M. & Choi, M. & Son, C. & Oh, H.(2008). 2008 National Survey of the Disabled Person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Chang, H. & Huh, N. & Kim, Y.(2001), Factors affecting battered women's strategic responses to violence. *The Korean Family Welfare Association, 7*, 231-254.
- Cramer, P. E. & Gilson, F. S. & Depoy, E.(2003). Women with disabilities and experiences of abuse.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vol. 7, no. 3/4*. 183-199.
- Cramer, P. E. & Plummer, S.(2009). People of color with disabilities: intersectionality as a framework for analyz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social, historical, and political contexts.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18*, 162-181.
- Curry, A. M. & Renker, P. & Robinson-Whelen, S. & Hughes, B. R. & Swank, P. & Oswald, M. & Powers, E. L.(2011). Facilitators and barriers to disclosing abuse among women with disabilities. *Violence and Victims, vol. 26, Number 4*.
- Guterman, B. N. & Haj-Yahia, M. M. & Vorhies, V. & Ismayilova, L. & Leshem, B.(2010). Help-seeking and internal obstacles to receiving support in the wake of community violence exposure : the case of arab and jewish adolescents in Israel.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9*, 687-696.
- Im, S.(2012), Human rights in the residential facility of the disabled, *Justice, vol. 128*, 7-59.
- Jang, S. & Kim, J.(2005), A study on battered women's experience in calling the police. *The Korean Family Welfare Association, 16*, 127-160.
- Jung, Y. & Kang, H.(2011), The relationship among acceptance disability, exercise attitude, and sociality for participants with physical disability in sports for all.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 46(1)*, 957-966.
- Kim, H. & Kim, K. & Park, J.(2009), Study of grounded theory for disability: acceptance and hope of family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27*, 35-72.
- Kim, H. & Jo, S.(2009), Predicting Employment Outcomes among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from Acceptance of Disability, Severity, and Location of Disability,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vol 19(1)*, 167-186.
- Kim, J.(1998), Analysi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Attitude and Behavior: the case of family violence in Korea, *The Korean Family Welfare Association, 2*, 87-114.
- _____ & Lee, J. & Chung, Y.(2008), The effect of family violence exposure on school violence : Focusing on attitude toward school violenc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6*, 31-59.
- _____ & Jung, Y. & Song, A.(2011), Active coping of spouse of domestic violence perpetrator who completed battered intervention program and recidivism: Study of follow-up evaluation for domestic violence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42(4)*, 217-238.
- _____ & Lee, B. & Yonn, Y.(2011), Relation between experience of violence of physically disabled in the childhood and the act of family violence in the adulthood: Moderating effect of the law perception.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vol. 18(6)*, 201-225.
- _____ & Lee, J. & Choi, S.(2012), A moderating effect of help-seek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violence in sports, depression, and intention to sport continuance among female athlet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43(1)*, 59-87.
- _____ & Choi, J& Emery, R. C & Kim, D. & Park, S. & Jung, Y. & Lee, J.(2010). 2010 Domestic Violence Survey of South Korea(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_____ & Choi, J& Emery, R. C & Kim, D. & Park, S. & Jung, Y. & Lee, J.(2010). 2010 Domestic Violence Survey of South Korea(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Kim, J. & Lee, Y.(2008), Study on the experience of battered women maintaining non-violent marriage relationship - based on battered women using of formal protective system.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23, 5-41.
- Kim, K. & Yoon, H.(2012), Associations between adolescents' victimization of violence, tolerance toward violence, and cyber violence offending behavior.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39, 213-244.
- Lightfoot, E. & Williams, O.(2009). The intersection of disability, diversity, and domestic violence : results of national focus groups.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18, 133-152.
- Lim, C. & Bae, H.(2011), Risk factors for violence victimization of wom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vol. 15, 19-46.
- Nosek, A. M. & Hughes, B. R. & Taylor, B. H. & Taylor, P.(2006). Disability, psychosocial,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abused wom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Violence Against Women*, 12, 838.
- Oh, H. & Lee, H.(2011), The Effect of Physical Function and Social Support on Social Participation of Noncongenital-Spinal Injured Persons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Acceptance of Disability.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vol. 15(2), 1-23.
- Siskin, A.(2001). Violence against women act: history, federal funding, and reauthorizing legislation. <http://www.globalaging.org/elderrights/us/2006/crsreport.pdf>.
- Slyter, E.(2009). Intimate partner violence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 : Implications for disability service system case management practice.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18, 182-199.

접수일 : 2013년 07월 15일

심사일 : 2013년 07월 30일

게재확정일 : 2013년 09월 24일